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49

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:정춘생·서왕진·황운하

김준형 • 이해민 • 신장식

차규근 · 강경숙 · 김선민

백선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증인·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·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 및 제15조).

법률 제 호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"제14조제1항 본문"을 "제14조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증 등의 죄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증인·감정인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위증 등의 죄) ① 이 법에	제14조(위증 등의 죄)
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	
이 허위의 진술(서면답변을 포	
함한다)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	
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	
역에 처한다. <u>다만, 범죄가 발</u>	<u><단서 삭제></u>
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	
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	
<u>수 있다.</u>	
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	<u><삭 제></u>
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	
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	
<u>야 한다.</u>	
제15조(고발) ① 본회의 또는 위	제15조(고발) ①
원회는 증인·감정인 등이 제1	
2조·제13조 또는 <u>제14조제1항</u>	<u>제14조</u>
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	
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. 다	<u>-</u>
만,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	
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	
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	
수 있다.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	<u><삭 제></u>

제1항단서의자백이있는경우에는고발하지아니할수있다.

③ • ④ (생 략)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